

##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- 187호

「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」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2023년 3월 8일  
보건복지부장관

### 「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」 참여기관 공모

#### 1. 시범사업 목적

아동 연령별 맞춤형 교육·상담으로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, 발생 가능한 위험을 조기·적기에 개입함으로써 평생 건강한 삶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

#### 2. 시범사업 기간: '22.12.26. ~ '25.12.31.

#### 3. 신청대상 및 절차

##### 가. 신청대상 의료기관

-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(보건의료원 포함)으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
  - (대상 기관)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,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, 「지역보건법」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(의과)
  - (인력 기준) 소아청소년과 전문의\*(상근, 비상근)
    - \* '23.3.1. 기준 요양기관현황에서 전문의가 확인되는 의료기관에 한함
- 요양급여비용을 정보통신망(EDI, 포털서비스 등)으로 청구하는 기관

## 나. 신청서 제출

- 제출기간: '23.3.8.(수) ~ '23.3.21.(화) 18:00까지(신청 완료분에 한함)
- 제출서류: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(붙임1, 2 참조)
- 접수방법: 요양기관업무포털 내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통해 신청

### ◇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(<https://biz.hira.or.kr>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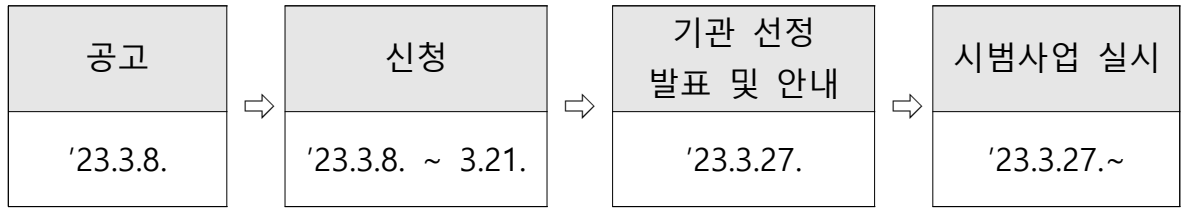
- ① 요양기관업무포털(<https://biz.hira.or.kr>) 접속
- ② 공동인증서 로그인
- ③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([https://aq.hira.or.kr/hira\\_mc](https://aq.hira.or.kr/hira_mc)) 선택/ 화면이동
- ④ 시범사업 신청
- ⑤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
- ⑥ 시범사업명: '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' 선택
- ⑦ 요양기호, 요양기관명, 신청일자, 신청구분: 공동인증서 로그인 정보로 자동입력
- ⑧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, 메일주소: 연락 가능한 이메일 기재
- ⑨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: **내용확인** 을 눌러 내용을 확인  
\* 참여약정서 [미확인]일 경우, 신청 불가
- ⑩ 약정서 동의여부: 선택  
\* [미동의]일 경우, 시범사업 참여 불가
- ⑪ **신청** 을 눌러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

- 기타사항: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## 다. 선정기준 및 절차

- 선정규모: 약 1,800개 내외 기관
- 선정기준
  - 의료기관의 신청 기준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
  - 신청기관의 종별, 전문과목 등 신청요건 적합 여부 등 확인하여 시범사업 참여기관 등록 완료 예정

○ 선정절차



○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발표 및 안내

- 시기: '23. 3. 27.(월) 예정
- 방법: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확인\*

\* 요양기관업무포털(<https://biz.hira.or.kr>) → 공동인증서 로그인 → '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' 선택/화면 이동 → 시범사업 신청 → 시범사업 신청내역 조회

진해상황	내용
검토진행	시범기관 검토 중
승인	시범기관으로 승인
반려	시범기관으로 승인되지 않거나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

4.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

-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사업 모니터링,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
- 시범기관에서는 시범사업 수가와 관련하여 소속된 전담의의 자격 변동이 있을 시, 이를 지체 없이 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자원 통합 신고포털에 신고하여야 함
-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

[붙임 1]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

**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**

기관명		요양기호	
전화번호		e-mail	

본 의료기관은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하고  
사업 약정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, 기관장)

(서명 또는 인)

**보건복지부장관 귀하**

<첨부>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

## [붙임 2]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

###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

기관명 :

요양기호 :

위 기관은 **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**(이하 “시범사업”) 수행기관(이하 “시범기관”)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수가 반환 및 시범사업 기관 지정 취소 등 보건복지부(이하 “복지부”)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약정서를 제출합니다.

#### 1. 의무 및 협조

- 가.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,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협의 등을 요청하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- 나. 시범기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그 밖에 복지부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  - ① 시범기관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.
  - ②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, 모니터링,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.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의료기관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  - ③ 시범기관은 환자와 그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다. 시범기관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#### 2. 운영계약 체결 및 관련서류 제출 등

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의료진에 대해 직접 고용함을 원칙으로 하며,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3. 점검상의 조치

- 가. 복지부는 시범사업 수행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료기관을 출입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·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- 나. 복지부는 시범기관이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, 시범기관에 대해 시범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#### 4. 시범사업의 중단

시범기관은 시범사업 기간 중 폐업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범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기간 동안 시범사업 참여가 중단된다.

#### 5. 제재조치 등

- 가.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관련 금액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“건보공단”)에 반환하여야 한다.
- 나. 시범기관은 착오,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지체 없이 건보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.
- 다. 건보공단은 가~나목에 따른 확인점검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범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,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금액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라. 시범기관이 가~나목에 의하여 건보공단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보공단이 시범기관에 지급하여야할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지급을 정지하거나 요양급여 비용 등이 있을 때에는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.
- 마.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건보공단은 시범기관이 가~다목의 사유에 해당한 때 또는 이행 약정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사유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범기관의 시범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다. 이때, 복지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시범기관의 시범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한다.

#### 6. 준용

이 이행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,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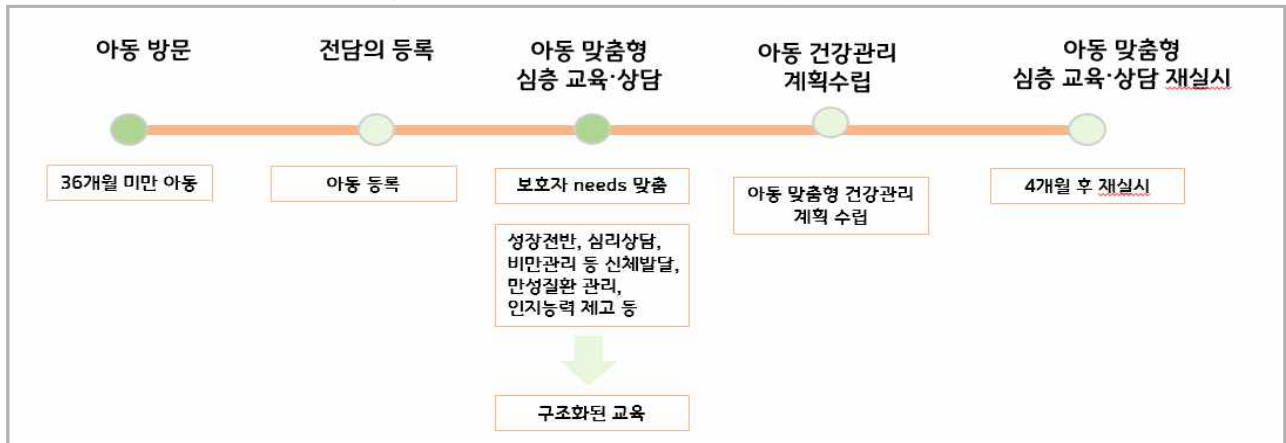
기관장 (직인)

보건복지부장관 귀하

##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

### □ 사업개요

<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개념도 >



- 아동에게 전문적인 교육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심층 교육·상담(▲성장전반, ▲심리상담, ▲비만 관리, ▲만성질환 관리, ▲인지능력 제고 등)을 제공하거나 치료방법 결정, 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설명 등 전문적·종합적 상담 실시
- 심층 교육·상담을 통해 아동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, 주기적으로 교육·상담을 실시하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아동 건강관리제도

### □ 사업대상

- (대상기관) 의원급\* 및 병원급\*\* 의료기관(보건의료원\*\*\* 포함)
  - \*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
  - \*\*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
  - \*\*\* 「지역보건법」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(의과)
- (전담의)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소속으로 교육과정(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교육)을 이수\*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(상근, 비상근)
  - \*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(<http://www.hurb.or.kr>)에 교육 이수증 등록
  - 서비스의 질 보장을 위해 전담의 1인당 250명까지 등록
- (대상아동) 만0세~만2세(36개월 미만)인 아동으로, 시범사업에 동의한 자

## □ 사업내용

### ○ 서비스 내용

- 아동 맞춤형 발달 단계 및 건강관리 정보 제공, 질환 소개 및 관리 방법 설명 등을 통해 치료방법 결정, 질병 경과 모니터링 등 실시
- (교육·상담) 건강관리 능력 및 질환 이해도 향상을 위해 교육·상담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·상담 실시

서비스 등록	서비스 제공			결과 활용 및 평가
<b>시범사업 참여기관</b> 전담의 교육이수 전담의 등록	<b>맞춤형 심층 교육·상담</b>	<b>건강관리 계획수립</b>	<b>맞춤형 심층 교육·상담 재실시</b>	<b>결과 제공</b>
	보호자 needs 맞춤형	아동 맞춤형 예방진료 및 질환 개선 목표 등	보호자 피드백에 따른 심층 교육·상담 등	보호자 대면 설명 및 피드백
<b>아동</b> 가까운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전담의 선택, 서비스 신청	(표준화된 프로토콜 기반) 성장 전반, 심리 상담, 비만 관리, 만성 질환 관리, 인지능력, 보건교육 등			<b>사업 모니터링</b>
				사업 효과평가 연구

▶(서비스 제공기간) 3년 ▶(심층 교육·상담주기) 4개월 1회

### ○ 서비스 절차

- (서비스 등록) 전담의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 후 등록, 아동은 의료기관 및 전담의를 선택하여 서비스 요청
- (서비스 제공)
  - ① 맞춤형 심층 교육·상담 실시: 아동에게 맞춤형 건강 및 질환에 대한 교육·상담 수행. 필요시 다른 의료기관 의뢰
  - ② 아동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수립: 아동 맞춤형 교육·상담 결과에 따라 예방진료 및 치료계획 수립하여 아동의 건강관리 또는 개선 목표 제시
  - ③ 맞춤형 심층 교육·상담 재실시: 보호자 피드백 및 아동 건강 상태 확인 후 맞춤형 교육·상담 재실시
- (결과 활용 및 평가) 교육·상담이 종료된 시점에 아동의 건강상태 변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호자 설명 및 피드백, 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평가 연구



## □ 수가(안)

( ' 23년 점수당 단가 기준: 병원 79.7원, 의원 92.1원)

분류번호	코드	분류	점수	금액(원)
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		교육·상담료		
	ID300	가. 병원 내 의과	618.88	49,320
	ID310	나. 의원, 보건의료원 내 의과	537.92	49,540

\* 보건의료원 48,950원( ' 23년 보건의료원 점수당 단가 91.0원)

- 외래 진료 시 산정함
- 요양기관 종별·공휴·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
- 최소 15분~20분 이상의 교육·상담을 제공한 경우 산정함
- 교육·상담료 이외에 별도로 이루어진 진찰료, 검사료, 처치료 등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함
-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에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점검서식\*을 작성·제출한 경우 산정함

\*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작성·제출 방법은 시범사업 지침 참조

## □ 전담의 교육

- (교육목적) 전담의가 되기 위한 기본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아동의 건강상태 특성을 이해하여 최적의 건강관리 서비스 및 예방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제고
- (교육주관)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및 학회
- (교육대상) 시범기관에 근무하는 「의료법」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(소아청소년과)
- 전담의는 개설된 과목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하며, 교육시간의 100% 수강 시 교육수료
- 교육과정 이수 후 소아청소년과 의사회·학회에서 교육 이수증\* 발급

\* 교육 이수증 등록 방법은 시범사업 지침 참조

[붙임 4]

##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신청방법

□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등록

The screenshot shows a web application interface for applying to be a target institution for a trial project. The main title is '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' (Application for Trial Project Target Institution). The form contains several sections:
 

- 시범사업명** (Trial Project Name): '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' (Child Primary Care Deep Interview).
- 요양기호** (Nursing Preference), **요양기관명** (Nursing Institution Name), **신청일자** (Application Date), **신청구분** (Application Category), **급성의료기관구분** (Acute Care Institution Category).
- 신청시작일** (Application Start Date): 2022-11-01, **신청종료일** (Application End Date): 2022-11-30.
- 방문진료제공지역** (Home Visit Medical Service Area): 시도명 (City Name), 시군구명 (City/County Name).
- 의료기관전문과목** (Medical Institution Specialty): Includes checkboxes for 외과 (Surgery), 경형외과 (Plastic Surgery), 신경외과 (Neurology), 흉부외과 (Thoracic Surgery), 성형외과 (Cosmetic Surgery), 마취통증학과 (Anesthesiology/Pain Management), 산부인과 (Obstetrics/Gynecology), 안과 (Ophthalmology), 이비인후과 (ENT), and 비뇨의학과 (Urology).
- 담당자 전화번호** (Responsible Person Phone Number) and **담당자 메일주소** (Responsible Person Email Address).
- 기타내용** (Other Contents) text area.
- 시범사업참여약정서** (Trial Project Participation Agreement): Includes a '내용확인' (Content Confirmation) button and a '[미확인]' (Not Confirmed) status.
- 약정서 동의여부** (Agreement Consent): Radio buttons for '동의' (Consent) and '미동의' (No Consent).
- 참고 자료** (Reference Materials) table with columns for '파일명' (File Name) and '파일용량' (File Size).
- 추가사항** (Additional Information) section with a '첨부파일' (Attachment) table and '추가' (Add) and '삭제' (Delete) buttons.

 At the bottom, there is a '신청' (Apply) button and a date field showing '2022 년 월 일'.

- ① 요양기관업무포털(<https://biz.hira.or.kr>) 접속 > 공동인증서 로그인 >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> 시범사업 신청 >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선택
- ② 시범사업명: ‘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’ 선택
- ③ 요양기호, 요양기관명, 신청일자, 신청구분 공동인증서 로그인 정보로 자동입력
- ④ 담당자 전화번호, 담당자 메일주소는 로그인 정보로 자동입력 되며 필요 시 수정 가능
- ⑤ 시범사업 참여약정서 **내용확인** 을 눌러 상세 내용 확인  
 ※ 참여약정서 [미확인]일 경우, 신청 불가
- ⑥ 약정서 동의여부 선택  
 ※ [미동의]일 경우, 시범사업 참여 불가
- ⑦ **신청** 을 눌러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

## □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내역 확인



시범사업 신청내역 조회

시범사업 신청 > 시범사업 신청내역 조회

시범사업명: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

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정보내역

순번	시범사업명	신청유형	제출구분	신청일자	승인일자	진행상태	담당자 전화번호	담당자 메일주소	첨부문서여부	기타내용
1	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	포탈신청	인터넷			승인				

- 1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> 시범사업 신청 > 시범사업 신청내역 조회 선택
- 2 시범사업명: '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' 선택하여 신청정보 확인
- 3 진행상태: 검토진행/승인/반려로 진행상태 표시되며 승인 이후에 시범사업 관련 화면 사용 가능